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방류수 재사용?

방류수 일부를 폐수처리장약품 희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사의 폐수처리장은 화학적처리 방식으로 1차 소석회 > 2차 황산반토 > 3차 폴리머 > 침전조 > 방류조 > 방류(공단폐수처리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전조 상등수 일부를 소석회 희석수로 사용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사용될 방류수는 전량 다시 소석회와 같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재사용이라기 보다는 반송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재사용 목적은 약품희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Q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검임가능 여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대기 1종 사업장에도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기술관리인을 검임할 수 있나요?

A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환경기술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은 검임할 수 없습니다.

Q

폐수처리장 집수조 침전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폐수처리장 1차 집수조에 쌓인 침전물(슬러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1차 집수조의 상등액은 2차 집수조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1차 집수조 침전물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동 침전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되는지요?

A

폐수처리장 1차 집수조의 침전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집수조의 침전물을 농축·탈수하여 폐수처리오니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나, 집수조 침전물을 단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을 역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관한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 2에 따라 입도가 40mm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경우 중간처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의해 재활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요? 상기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중간 처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해 재활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 사목 규정에 따라 입도가 40mm 이하로 절삭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중간처리(파쇄·분쇄) 과정 없이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파쇄·분쇄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삭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Q | 폐기물 보관관리 방법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7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휴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쩌다보니 실수로 사업장에서 2012년 7월 말경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회용컵, 폐지류, 폐비닐 등)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폐 기름장갑(폐유 5% 미만), 폐비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혼합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시에는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서 처리(수집·운반·보관 및 처분)기준과 방법이 같고,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